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재식 과장(044-203-5540), 규제개혁TF 배준형 팀장(5590)
국표원 표준인증개혁 TF 박주승 과장(02-509-7274), 배진석 연구관(7050)

산업부, 『제1차 규제 청문회』 개최

- KS 중심으로 인증 통합, 민간인증 전환, 불필요한 인증 폐지 등 추진 -
- 3개 에너지효율관리 인증제도 대폭 개선 -
- 규제신문고 답변내용, 차관이 직접 챙긴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4월 20일(日) 오후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수의 인증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로 기업은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할 대표적 규제로 인식

○ 규제 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청문위원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도 개선방향과 이에 대한 실효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제 1차 규제청문회 개요>

▪ 일시/장소 : 4.20(일) 15:00~17:40 / 국표원(과천) 회의실
▪ 참석 : (청문위원) 장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실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성호 변호사
(인증 담당) 국표원장, 인증제도 담당 국·과장, 관련 민간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에너지 인증제도 집중 논의

□ 먼저 소관 31개 인증제도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크게 **① 인증기준(기술기준)의 KS로의 일원화, ②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③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하고, 중복인증은 폐지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키로 함

○ 민간 청문위원들은 EU의 통합 CE 마크처럼 기존 KS로의 기준 통합이 소비자 신뢰제고와 기업의 중복인증 및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증 통합 시 과도기적 조치로 "KS 모듈화" 도입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함

* 예) KS 인증과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통합 시 "KS 로봇" 등으로 모듈로 표시

□ 열띤 토론 끝에 합의된 최종 인증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음

*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

○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複數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청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함

○ 아울러,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의 특성으로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 인증으로 존치하되, 그 인증기준을 KS 기준과 일치화하여, 중복기준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 민간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 필요성을 상실하였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키로 함

*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
**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 그 외에도,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으나, 부처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녹색인증의 경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이와 같은 **인증제도 개선**으로 **개별 기업은 수십~수백만원의 인증 비용 부담 경감으로 인증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KS로의 인증 통합으로 해외 선진국처럼 **'통합브랜드로서의 인지도와 신뢰성 향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별도 세션으로 70분간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3개 인증에 대해 '절대적 기준도 아닌데, 정부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줘야 하는가?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별도로 운영될만한 제도인가?'라는 시각에서 원점 재검토한 결과, **일부 제도는 통합하고, 존치되는 제도도 대폭 개선**하기로 함

*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①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대표적 제도 예), ② 대기전력저감제도, ③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등 3개 세부 프로그램 및 인증

○ 우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함**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청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음

○ 아울러,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미국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하였음

○ 한편, 피청문측의 한 민간 참고인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을 돕는 측면의 제도인데, 오늘 청문회 규제개혁 대상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발언해 규제개혁을 둘러싼 대내외 시각 및 온도차가 클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 끝으로, 인증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에 건의된 내용과 담당자의 답변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금번 청문회에서 함께 다루어졌음

○ 윤상직 장관은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적극적 자세'도 못지 않게 중요함을 강조하며, 청문위원으로 함께 참석한 **차관들에게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을 직접 챙겨볼 것을 당부**하였음

○ 청문위원들도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제도의 이해가 부족한 민원인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사소한 것도 보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윤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청문회가 본인도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국민, 기업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좀 더 창의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에 임해달라**고 촉구하였음

○ 아울러 규제 완화 시 부작용은 없는지 **관련업계,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서울대 한민구 교수도 정부의 규제 존폐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자리에 **민간이 참여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신선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전체로 확산되기를 희망**하였음

□ 산업부는 금일 논의된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내로 최종 확정하고, 금년중에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앞으로도 산업부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예)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관련 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등

○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표원 표준인증개혁 TF 배진석 연구관 (☎ 02-509-7050), 에너지관리과 윤상재 사무관(☎ 044-203-5382), 규제개혁TF 송영상 사무관(☎ 044-203-53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산업부『제1차 규제 청문회』개요

□ 추진 배경

○ **주요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개선방향 도출

○ 규제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4.4.20(일), 15:00 ~ 17:40** / 국표원(과천) 1동 1층 세미나실

○ 참석 : 청문위원 8인, 인증제도 담당자*, 민간전문가(4명) 등 50여명

* 국표원장, 인증제도별 담당 국·과장 20명 참석

【청문위원】
(산업부) 윤상직 장관, 김재홍 제1차관, 한진현 제2차관, 박청원 기획실장
(민 간) 한민구 서울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성호 변호사

○ 안건 : **산업부 인증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인증 관련 규제개혁신문고 건의(2건) 내용**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5분)**	**▪ 모두 말씀**	장 관
15:05~16:10	**(65분)**	**▪ [세션1] 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15:05~15:15	(10분)	·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국표원장
15:15~16:10	(55분)	· 토론 및 의결	
16:10~17:20	**(70분)**	**▪ [세션2] 쟁점 인증제도 토론**	
15:45~15:55	(10분)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개선방향	수요관리단장
15:55~16:35	(60분)	· 토론(참고인 : 민간전문가 4인) 및 의결	
17:20~17:35	**(15분)**	**▪ [세션3]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내용(2건)**	
17:20~17:25	(5분)	· 신문고 건의 및 답변내용	제품안전국장
17:25~17:35	(10분)	· 토론 및 의결	
17:35~17:40	**(5분)**	**▪ 마무리 말씀**	장 관

* (참고인 민간전문가) 장우진 서울과기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박진봉 전문가, 김의경,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장

첨부 2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주요쟁점

□ 주요쟁점 및 논의내용

구 분	주요 쟁점 및 지적	피청문측 답변
소비효율 등급표시	○ 효율등급의 의무적 표시가 필요한가?	○ 효율등급 표시는 소비자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선택하도록 정보제공의 수단으로 의무화 유지 필요 ○ 소비자에게 효율등급 라벨의 인지도(78.1%)가 매우 높고 실제 제품구입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 ○ 미국, EU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에너지라벨의 표시를 의무화
	○ 효율관리 대상품목의 최소화 및 기술기준의 KS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 소비자 정보제공, 에너지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 품목의 최소화 ○ 등급라벨 표시대상 품목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 위주로 조정 ○ 효율등급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대기전력기준은 KS화 필요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 소비효율 등급표시와 통합하여 운영 (단, 대기전력저감 적용품목 최소화) ○ 일본,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효율관리와 대기전력을 통합하여 운영
고효율 인증	○ 고효율인증제도가 별도의 제도로 운영할 만큼 필요한 제도인가?	○ 고효율인증제도는 신규 개발기기의 초기시장창출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관련 산업육성 및 기기의 고효율화에 많은 성과를 냄 ○ 신규 개발된 품목에 대한 초기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대부분의 인증업체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할 때 기존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구 분	주요 쟁점 및 지적	피청문측 답변
고효율 인증	○고효율인증제도가 단순 마케팅 수단 또는 정부 인증으로 인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고효율인증기준은 보편적인 기술수준보다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한 상황 ○또한 인증획득후에 고효율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능력 확보에 대한 점검을 위해 제품 및 공장사후관리 등을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의 효과성이 있음
	○고효율인증의 기술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가 아닌가?	○고효율인증제도의 고효율기준은 전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상위 20~30% 정도 효율수준을 고효율인증 기술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인증을 획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며,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고효율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음

첨부 3 3대 효율관리제도 현황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 개요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 위해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제품에 **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하고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으로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수입업체의 의무적(Mandatory) 제도**

□ 도입 및 법적근거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92년도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를 시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및 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용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2-320호,'12.12.27)

□ 대상 품목 : 37개 품목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TV,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EHP, 제습기, 전기장판, 전기온수매트, 전열보드, 전기침대, 전기라디에이터, 자동차, 타이어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 개요

○ 에너지이용 효율성이 높고 **보급 촉진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인증제도



- 고효율기자재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여 고효율제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급을 가속화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마크 표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임의적(Voluntary) 제도**

□ 도입 및 법적근거

○ **'96년 6개 품목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illegible]-35호)

□ 대상 품목 : 45개 품목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펌프, 원심식스크류냉동기, 무정전전원장치, 메탈할라이드램프안정기, 나트륨램프안정기, 인버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수중폭기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 방전(HID)램프 고조도반사갓,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터보블로어, 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PLS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 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가스히트펌프,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 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3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 개요

○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위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표시**하고,



- **미달제품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



* 대기전력이란?
 컴퓨터, 셋톱박스 등 전자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 대상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의무적(Mandatory) 제도**

□ 도입 및 법적근거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99년 1월 자발적 신고제도로 시작**, '08년 8월 TV부터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의무 도입

* 현재 18개 품목에 대기전력경고표시 의무제도 적용 중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 ~ 21조**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36호, '14.3.13)

□ 대상 품목 : 22개 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라디오카세트, 전자레인지, 셋톱박스, 도어폰, 유무선 전화기,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 공유기